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채납자 대응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을 증원하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증원하며, 국세청에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세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정원으로 전환 배정

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과약 등을 위하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6급 7명, 7급 71명) 중 21명(6급 7명, 7급 14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57명(7급 5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소득분야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3명(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53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51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17명(9급 17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3. 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에 관한 업무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14조의2제2항제8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9.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12.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 제18조 및 제21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41명”을 “44명”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

다.

1. 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세행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3. 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4. 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 관리
- ④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각각 “2028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873”을 “905”로 하고, 일반직 계 “869”를 “9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56”을 “88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9,966”을 “20,202”로 하고, 일반직 계 “19,966”을 “20,2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942”를 “20,178”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 2월 28일”을 각각 “2028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6급 이하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 제36조제1항·제4항, 제37조의3제2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별표 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징세법무국 1개 과	15명
2) 법인납세국 1개 과	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	1명
2)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	3명

2.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가.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지방국세청)	59명
나.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세무서)	40명
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30명
라. 실시간 소득과약 업무(세무서)	489명
마.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세무서)	57명
바.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세무서)	143명
사.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세무서)	53명

[별표 4의2]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1조의2제4항 관련)

인공지능혁신담당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4급 이하	9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법인납세국) ① (생략)	제13조(법인납세국) ① (현행과 같음)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u>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u>
<u><신 설></u>	3. <u>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 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u>
<u><신 설></u>	4. <u>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u>
<u><신 설></u>	5. <u>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u>
2. (생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4. ~ 8. (생략)	7. ~ 11.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 (생략)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 (현행과 같음)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u>

<u><신 설></u>	9. <u>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u>
<u><신 설></u>	10. <u>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u>
<u><신 설></u>	11. <u>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u>
<u><신 설></u>	12. <u>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u><신 설></u>	13. <u>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u>
8. (생략)	14.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u>기획재정부령</u> 으로 정한다.	제15조(위임규정) ----- ----- ----- ----- ----- 재 <u>정경제부령</u>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u>기획재정부령</u>	제18조(하부조직) ----- ----- ----- ----- ----- ----- <u>재정경제부령</u>

으로 정한다.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 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 (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u>기획재 정부령</u> 으로 정한다.	제21조(하부조직) ----- ----- ----- ----- ----- ----- ----- <u>재정경 제부령</u> -----.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 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정한다.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① (현행 과 같음) ②----- ----- ----- <u>재정경제부장관</u> -----.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①·② (생략) ③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 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 의 등급구분은 <u>기획재정부령</u> 으 로 정한다.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재정경제부령</u> -- -----.
제26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	제26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 음) ②----- -----

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무서장) ①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의 서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④ (생략)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 재정경제부령-----.

제34조(세무서장) ①-----

----- 재정경제부령-----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하부조직) -----

----- 재정경제부령-----.

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령-----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재정경제부령-----

-----.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정경제부령-----

-----.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재정경제부령

②

재정경제부령

44명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7장 평가대상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정원) ① 「행정

--. -----

----- 재정경제부령-----
--.

② -----

---- 재정경제부령-----
--. -----

-----.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 대상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과를 둔다.

② 소득자료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① -----

----- 평가 대상 조직 및 정원-----.

② -----
----- 재정경제부령-----.

제41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세행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3. 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4. 인공지능 국세상담 대상 세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한시정원)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③ (생략)

<신설>

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 품질
관리

④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한시정원) ① -----

----- 2028년 2월 29일 -----

-----.

② -----

----- 2028년 2월 29일 -----

-----.

③ (현행과 같음)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

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3</u>	<u>905</u>	+32
•	•	•	
•	•	•	
일반직 계	<u>869</u>	<u>901</u>	+3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56</u>	<u>888</u>	+32
•	•	•	

[별표 3]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966</u>	<u>20,202</u>	+236
일반직 계	<u>19,966</u>	<u>20,202</u>	+236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9,942</u>	<u>20,178</u>	+236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